

# 정 관

[17차]

재단법인 한국소아암재단

# 정 관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 (명칭)** ① 이 법인은 “재단법인 한국소아암재단” (이하 “법인” 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② 법인의 영문 표기는 “KOREA PEDIATRIC CANCER FOUNDATION” 으로 한다.

**제2조 (목적)** 이 법인은 소아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아들이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로 조속히 완치되어 국가사회의 건강한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랑 실천 및 후원 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 (사무소의 소재지)**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‘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75 5층 501호’ 에 두며, 필요할 경우 시·도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**제4조 (사업)**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국내 외 소아암 환아 정서 안정 도모 및 치료지원 사업
2. 국내 외 소아암 환자 관련 쉼터 운영 및 관련사업
3. 국내 외 소아암관련 연구지원 사업
4. 북한 어린이 소아암 백혈병 환자 지원 사업
5. 소아암 및 백혈병 환아를 위한 홍보·계몽·출판·공연사업
6. 국내 외 소아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사업
7. 행정부처 또는 유관단체 위임업무
8.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**제4조의 1 (사업단)** ① 사회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별도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.

② 동 사업단의 명칭은 ‘생활경제 사업단’ 으로 칭한다.

③ 사업단의 회계·인사 등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.

## 제 2 장 재산 및 회계

**제5조 (재산의 구분)**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
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과 평가액은 “별지 1”과 같다. <개 정 >

③ 보통자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④ 기본자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6조(재산의 관리)** ①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교환, 임대, 용도변경, 담보제공, 의무부담, 권리포기 등 기본재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7조 (재원)**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, 후원금, 찬조금, 기부금,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.

**제8조 (회계연도)**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.

**제9조 (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)**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,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.

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
2.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
3.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

**제10조 (세제잉여금)**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상환금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익자산 또는 기본자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.

**제11조 (재산의 사용 및 대여)** 이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.  
기타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제1조의 목적에 비추어 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.

1. 이 법인의 출연자
2. 이 법인의 임원
3. 이 법인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4.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
## 제 3 장 임 원

### 제12조 (임원)

1. 이사장 1인(상임)
2. 상임이사. 1인 - 2인 이내
3.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(이사장 및 상임이사 포함)
4. 감사 2인

### 제13조 (임원의 선임)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
-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.
- ③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고 이사회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.
- ④ 임원이 궐위 된 경우에는 궐위 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-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
### 제13조의 1 (명예회장 및 고문) ① 이 법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기하고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명예 회장 또는 고문을 둘 수 있다.

- ② 명예회장 및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.

### 제14조 (임원의 임기) ① 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- ②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2개월 이내로 선임하여야 하며, 단 신임 임원의 첫 임기는 4년 이내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.
-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
### 제15조 (임원의 구성)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.

**제16조 (감사)**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.

**제17조 (임원의 결격사유)**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4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 자 또는 정지된 자

**제18조 (임원의 해임)** 이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

1.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
2.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
3.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**제19조 (임원의 직무)**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도 및 감독한다.

③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④ 감사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이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 운영과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불법,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.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**제20조 (임원의 보수)** 법인은 비상임이사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상임이사에 대해서 필요한 실비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 4 장 이사회

**제21조 (이사회 구성)** ① 이 법인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는 이

사회를 둔다.

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**제22조 (이사회 의 기능)**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법인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,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2. 법인의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 변경에 관한 사항
3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4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5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6. 법인의 제 규정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7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여하는 사항

**제23조 (이사회 의 회의, 회기, 소집 등)**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로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차 년도 예산책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새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기이사회를 개최한다.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.

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 소집 목적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이 소집을 요구한 때부터 14일 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⑤ 이사장이 회의 참석 불가능할 시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.

**제24조 (이사회 의 개의와 정족수)**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25조 (의결제적사유)**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할 때

**제26조 (이사회 의 회의록)** ① 이사회 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## 제 5 장 조 직

**제27조 (직제 및 정원)** 이 법인의 직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28조 (직원)** ① 이 법인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직원의 임용, 승진, 복무,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## 제 6 장 보 칙

**제29조 (정관의 변경)**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30조 (해산)**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31조 (잔여재산의 귀속)** 이 법인이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.

**제32조 (준용 규칙)**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‘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’의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33조 (규정의 재정)**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34조 (공고)** 이 법인은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.

## 부 칙

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별지 1. 기본재산 목록

[별지]

기본재산 목록

구분	소재지	규모	평가가액	비고	
대지	서울 중구 중림동326-1	89.92㎡	479,273,600원	출연금 대체	
현금			<u>650,000,000원</u>		

법인이 사용할 인장

1) 직 인

2) 대표이사의 인

3) 계 인